

[별표 5]

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(제11조제1항관련)

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		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
1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	위험물관리기능장	별표 1의 모든 위험물
	위험물관리산업기사	별표 1의 모든 위험물
	위험물관리기능사	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기술자 격증에 기재된 유(類)의 위험물
2.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(법 제2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 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. 이하 별표 6 에서 같다)		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 물
3. 소방공무원경력자(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. 이하 별표 6에서 같다)		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 물